

한 실시계획승인이 고시된 지역”으로, “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”은 “물류단지개발과 관련되는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”으로, “물류단지 지정의 고시”는 “물류단지개발과 관련되는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”로, “물류단지개발계획”은 “물류단지개발과 관련되는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”으로 본다. [\(개정 2016. 1. 27.\)](#)

1. 항만 · 도로 · 하천 · 철도 · 용수공급시설 · 하수도 · 공공폐수처리시설 · 폐기물처리시설 · 전기시설 또는 통신시설사업
2. 가스 또는 유류의 공급시설사업
3. 물류단지의 조성을 위하여 그 물류단지에 연접한 취토장(取土場) 또는 돌산을 개발하는 사업
4. 물류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준설사업

**제50조(개발한 토지 · 시설 등의 처분)** ① 시행자는 물류단지개발사업에 따라 개발한 토지 · 시설 등(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시설의 설치가 완료되지 아니한 토지는 제외한다)을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다. [\(개정 2015. 12. 29.\)](#)

② 제1항에 따른 토지 · 시설 등의 처분방법 · 절차 · 가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**제50조의2(물류단지시설 등의 건설공사 착수 등)** ①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은 시행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(물류단지개발사업의 준공 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준공일을 말하고,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허가일을 말한다)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그 물류단지시설 또는 지원시설의 건설공사에 착수하거나 토지 · 시설 등을 처분하여야 한다. 다만,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[\(개정 2013. 3. 23.\)](#)

② 제1항에 따른 토지 · 시설 등의 처분에 관하여는 제51조를 준용한다.

[본조신설 2010. 2. 4.]

**제50조의3(이행강제금)** ① 물류단지지정권자는 제50조의2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여야 하며, 그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해당 토지 · 시설 등 재산가액(‘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’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액을 말한다)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. [\(개정 2013. 3. 23., 2016. 1. 19., 2020. 4. 7.\)](#)

② 물류단지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야 한다.

③ 물류단지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, 부과 사유, 납부기한, 수납기관,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.

④ 물류단지지정권자는 제50조의2제1항에 정한 기간이 만료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회 그 의무가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다.

⑤ 물류단지지정권자는 제50조의2에 따른 의무가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중지하되,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.

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 [\(개정 2013. 3. 23.\)](#)

[본조신설 2010. 2. 4.]

**제51조(개발한 토지 · 시설 등의 처분제한)** ①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은 물류단지시설 또는 지원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기 전에 분양받은 토지 · 시설 등을 처분하려는 때에는 시행자 또는 제53조에 따른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. 다만, 시행자나 관리기관이 매수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자나 관리기관이 매수신청을 받아 선정한 다른 입주기업체, 지원기관 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. [\(개정 2010. 5. 17., 2012. 12. 18.\)](#)

1. 한국토지주택공사